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①'24.1.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②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同시행령 공포일(12.5일)에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공인회계사 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 | | | |
|-------|---------------------|-----|-----|--------------------|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책임자 | 팀 장 | 류성재 (02-2100-2690) |
| | | 담당자 | 사무관 | 홍정수 (02-2100-2695) |
| |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 책임자 | 국 장 | 김철호 (02-3145-7750) |
| | | 담당자 | 팀 장 | 이성호 (02-3145-7753) |

1. '23.12.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도 인정기간 연장 대상인지?

* 공인어학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통상 2년)

- '23.12.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어학성적은 인정기간 연장 대상이 아님
 - 금번 개정안은 '24.1.1일 시행 예정으로, 그 前에 만료되는 성적은 인정기간 확대 대상이 아님
 - ☞ 유효기간이 '24.1.1일 이후에 만료되는 성적에 한하여 인정기간 연장 가능

2.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인정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 공인어학성적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